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 1.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 2.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복무 기간, 배치 기관 등
- 3.의무복무의사의 실태 보고 주기 및 그 내용
- 4.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면허정지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작 성 자	이름	전현정
	담당부서 (과)	공공의료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이중규		연락처	044-202-2534
	과장	백형기		이메일	jhj9809@mail.go.kr

2026. 07. 09.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이중규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2.규제조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위임법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공공의료 분야 필요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난이 가중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전문과목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7.규제내용	의무복무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에 정하되, 국가 및 지역의 의료이용과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의무복무의사</td><td>연간 100여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의무복무의사	연간 100여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의무복무의사	연간 100여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공의 전문과목을 일부 제한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미해당						

			관련된 규제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해당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법 제 35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국가 및 지역의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공의료 분야 필요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난이 가중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전문과목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 1
	내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 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국가 및 지역의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
규제대안2	대안명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 2
	내용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 전문과목으로 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과목 중 국가 및 지역의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과목을 지정할 수 있음	국가 및 지역의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파악 필요
규제대안2	기피 전문과목의 의사 인력 확충 가능	법에 명시된 소수의 전문과목 외의 전문과목은 수련 불가

		특정 전문과목에 한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현장 상황에 유연한 대응 불가
--	--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의무복무의사	입법예고 통해 의견수렴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국가 및 지역의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한 전문과목 제한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 확보 가능

3. 규제목표

-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권 보장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 목적의 정당성) 공공의료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공의 전문과목을 제한하고자 함
- (수단의 적합성·비례성)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이 전공의 전문과목을 선택할 시 전문과목을 일부 제한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제한임
- 전공의 전문과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양성한 의료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되지 못해 정책목표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미설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규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전공의 수련 과목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전공의 수련 과목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므로 유연한 분류 체계를 적용할 수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전공의 수련과목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지대상만 열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사후 평가관리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은 사후에 평가할 사항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일본 자치의과대학) 벽지 등 의료취약지 내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47개의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설립
 - 자치의과대학 입학생 선발, 재정 지원, 졸업 후 근무 배치 및 의무복무 등의 관리는 각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어 수행
 - 재학 기간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
 - 의무복무 및 전문성 강화를 연계한 9년 단계별 경력 지원 체계(1-2년차 초기 임상 연수, 3-5년차 벽지 등 의료취약지 근무, 6-7년차 후기 연수, 8-9년차 지역 의료 재종사 및 기술 환원)
- (미국 NHSC) 의료인력 부족 지역(HPSA,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의 인력 공백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함
 - NHSC는 크게 ①연방 장학금, ②연방 대출 상환, ③주 운영 대출 상환의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NHSC 재원은 ①지역사회보건센터기금(CHCF, Community Health Center Fund)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②연방 재량예산을 통해 일부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지원함
 - 2023년 회계연도 기준, NHSC를 통해 HPSA 지역에서 근무 중인 의료 인력은 총 18,335명으로 집계됨
 - 2020 회계연도 기준, NHSC 의무 복무를 완료한 인력 중 약 86%는 복무 종료 이후에도 HPSA 또는 기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고됨
- (독일 지역 의사 할당제) 「대학 입학에 관한 국가조약(Staatsvertrag über die Hochschulzulassung)」 제9조에 따라 지역 의사 할당제는 농촌 및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활동할 의지를 가진 가정의(주치의, Hausarzt)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 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할당제 정원으로 배정하는 제
 - 지역 의사 할당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¹⁾.

1) 의과대학 졸업 후 사회보장법 제5권(SGB V) 제73조 제1항 a에 따라 지정된

1) Landesamt für Gesundheit und Arbeitsschutz Nordrhein-Westfalen.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einer Bewerberin/eines Bewerbers. www.lzg.nrw.de/10350678에서 2026.02.10. 인출.

전문 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마쳐야 함.

2) 지정된 전문 과목은 공적 의료보험 의사협회(Kassenärztliche Vereinigungen, KVen)의 수요 예측을 고려하여 주정부가 특별한 공공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한 분야이어야 함

3) 이후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10년간 계약의 (Vertragsarzt)로서 가정의로 활동해야 함

- (프랑스 공공의료복무계약) 공공의료복무계약(Contrat d'Engagement de Service Public, CESP)은 2009년 7월 21일 제정된 「병원·환자·보건·지역법(Hôpital, Patients, Santé et Territoires, HPST)」에 따라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의 활동을 계약하는 재정 지원형 계약 제도

· CESP 대상자는 학업 또는 역량 보완 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개업의 또는 봉급의로서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함.

1) 지정 지역은 의료 공급 부족 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의미함

2) 지정 지역은 지역보건청 청장과 지역보건위원회(conseil territorial de santé)가 협의를 거쳐 2년마다 지정됨

3) CESP 대상자는 지정 지역 중에서 근무지를 선택함

· CESP 계약을 체결한 학생 중 3주기(전공 수련 과정)를 앞둔 학생은 매년 보건부 및 고등교육 담당 장관 공동 고시로 정해진 전공의 정원 내에서 전공을 선택해야 함

○ 타법사례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제한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 1>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34	1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 1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 의무복무, 전공과목 제한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와 동의가 이뤄지며, 학비를 포함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전폭적 지원, 졸업 후 경력관리 등이 병행되므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업무 위탁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서 졸업생에 대한 관리를 시행할 예정으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확보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5.26 제정, '26.11월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의무복무의사의 양성과 배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과목별 인력 수요 등을 관리할 예정임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직접 이행 부담이 수용가능 수준이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여 도입이 타당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34	1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 1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 1>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복무 기간, 배치 기관 등								
	2.규제조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3.위임법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6호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의무복무의사가 법률에서 정한 의무복무를 수행할 때 배치시기, 의무복무 기간 및 기관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정부개입 필요성)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기관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함								
	7.규제내용	○ 복무기관의 종류 구체화, 배치 시기 명료화, 배치 기준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복무기관 변경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td>의무복무의사</td><td>연 100여명</td></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의무복무의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의무복무의사	연 100여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의무복무기관의 구체화, 의무복무기관 배치시기 명확화, 의무복무기관 변경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의무복무 체계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미해당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 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 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입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2.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 국내외 연구·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의무복무의사가 출산한 경우에는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무복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2.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기관

현행	개정안
	(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무복무기관이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3.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의무복무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그 수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기관이 의무복무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기관의 지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및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 기준을 매년 3월 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 시기를 달리 정할

현 행	개 정 안
	수 있다. 1. 해당 의무복무의사 2. 해당 의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3. 해당 의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 4.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무복무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보에 기재된 날부터 배치된 의무복무기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의사별로 근무할 의무복무기관을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 지정 현황 2. 의무복무지역별 또는 의무복무기관별 의무복무의사 배치의 시급성 3. 의무복무의사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무복무의사의 전문과목 나. 전공의 수련 등 의무복무의사의 경력에 관한 사항 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성적표에 표시된 전체 최종성적 라. 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를 희망하는 지역 또는 기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의사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의사별로 근무할 의무복무기관을 정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에 일정 기간 단위로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 배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무복무기관의 변경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의무복무의사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치료 또는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

현 행	개 정 안
	지역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의무복무의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복무기관 및 의무복무지역 변경신청서 및 제1항에 따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접수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등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등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2. 현재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지역 등의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3.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지역 등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 및 추가 인력 배치의 필요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무복무

현행	개정안
	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신청인의 현재 의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2. 신청인이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의무복무의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의무복무기관에서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기관 및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의무복무의사가 법률에서 정한 의무복무를 수행할 때 배치시기, 의무복무 기간 및 기관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기관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복무 기간, 배치 기관 지정 1
	내용	-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구체적인 배치 시기 및 기준과 복무 기간, 추가적인 배치 기관, 복무기관 변경 등을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복무 기간, 배치 기관 지정 2
	내용	- 대안1에 아래 사항 추가 · 의무복무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지정 · 의무복무의사 배치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수시 배치 · 의무복무기관의 변경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의무복무의사의 개인상황에 따라 상시 의무복무기간 변경 가능토록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구체적인 배치 시기 및 기준과 복무 기간, 추가적인 배치 기관 등에	의무복무의사의 권익침해 보호 미흡 (다만, 법률에서 정한 의무복무 수행

	대해 규정함으로써 의무복무의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절차 등을 마련한 것으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
규제대안2	(민간의료기관 배치) 지역 민간의료 기관의 인력난 일부 해소 (의무복무의사 상시배치) 공공의료 기관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의무복무기관 상시변경 가능) 의무 복무의사의 권익보호	(민간의료기관 배치) 공공의료기관 인 력난 해소 미흡 (의무복무의사 상시배치)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 예측가능성 침해 (의무복무기관 상시변경 가능) 의무복무 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 불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의무복무의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무복무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안1로 선택

3. 규제목표

- 의무복무기관의 구체화, 의무복무기관 배치시기 명확화, 의무복무 기관 변경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의무복무 체계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 목적의 정당성) 의무복무는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이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 높이고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타당함
- (수단의 적합성) 의무복무는 법률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본 시행규칙은 그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 의무복무기관과 의무복무 배치 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은 의무복무의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안정적 제도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함께 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미설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규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의무복무의 개념이 명확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의무복무의 개념이 명확하므로 유연한 분류 체계를 적용할 수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복무 기간 및 기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금지대상만 열거하는 방식은 적용할 사항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복무 기간 및 기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후에 평가할 사항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일본 자치의과대학) 벽지 등 의료취약지 내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47개의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설립
 - 자치의과대학 입학생 선발, 재정 지원, 졸업 후 근무 배치 및 의무복무 등의 관리는 각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어 수행
 - 재학 기간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
 - 의무복무 및 전문성 강화를 연계한 9년 단계별 경력 지원 체계(1-2년차 초기 임상 연수, 3-5년차 벽지 등 의료취약지 근무, 6-7년차 후기 연수, 8-9년차 지역 의료 재종사 및 기술 환원)
- (미국 NHSC) 의료인력 부족 지역(HPSA,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의 인력 공백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함
 - NHSC는 크게 ①연방 장학금, ②연방 대출 상환, ③주 운영 대출 상환의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NHSC 재원은 ①지역사회보건센터기금(CHCF, Community Health Center Fund)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②연방 재량예산을 통해 일부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지원함
 - 2023년 회계연도 기준, NHSC를 통해 HPSA 지역에서 근무 중인 의료 인력은 총 18,335명으로 집계됨
 - 2020 회계연도 기준, NHSC 의무 복무를 완료한 인력 중 약 86%는 복무 종료 이후에도 HPSA 또는 기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고됨
- (독일 지역 의사 할당제) 「대학 입학에 관한 국가조약(Staatsvertrag über die Hochschulzulassung)」 제9조에 따라 지역 의사 할당제는 농촌 및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활동할 의지를 가진 가정의(주치의, Hausarzt)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 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할당제 정원으로 배정하는 제
 - 지역 의사 할당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2).

1) 의과대학 졸업 후 사회보장법 제5권(SGB V) 제73조 제1항 a에 따라 지정된

2) Landesamt für Gesundheit und Arbeitsschutz Nordrhein-Westfalen.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einer Bewerberin/eines Bewerbers. www.lzg.nrw.de/10350678에서 2026.02.10. 인출.

전문 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마쳐야 함.

2) 지정된 전문 과목은 공적 의료보험 의사협회(Kassenärztliche Vereinigungen, KVen)의 수요 예측을 고려하여 주정부가 특별한 공공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한 분야이어야 함

3) 이후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10년간 계약의 (Vertragsarzt)로서 가정의로 활동해야 함

- (프랑스 공공의료복무계약) 공공의료복무계약(Contrat d'Engagement de Service Public, CESP)은 2009년 7월 21일 제정된 「병원·환자·보건·지역법(Hôpital, Patients, Santé et Territoires, HPST)」에 따라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의 활동을 계약하는 재정 지원형 계약 제도

· CESP 대상자는 학업 또는 역량 보완 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개업의 또는 봉급의로서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함.

1) 지정 지역은 의료 공급 부족 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의미함

2) 지정 지역은 지역보건청 청장과 지역보건위원회(conseil territorial de santé)가 협의를 거쳐 2년마다 지정됨

3) CESP 대상자는 지정 지역 중에서 근무지를 선택함

· CESP 계약을 체결한 학생 중 3주기(전공 수련 과정)를 앞둔 학생은 매년 보건부 및 고등교육 담당 장관 공동 고시로 정해진 전공의 정원 내에서 전공을 선택해야 함

○ 타법사례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제도와 유사

- 「경찰대학 설치법」 및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과 선발된 학생에 학비 등의 지원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여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복무 기간, 배치 기관 지정 1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34	1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복무 기간, 배치 기관 지정 1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의무복무기관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의무복무 배치시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 의무복무의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률 제41조에 따라 의무복무 관리를 위한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행정적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5.26 제정, '26.11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의무복무기관 지정 현황, 의무복무 배치 및 변경절차 운영 점검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시 필요한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규제 내용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34	1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복무 기간, 배치 기관 지정 1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복무 기간, 배치 기관 지정 1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의무복무의사의 실태 보고 주기 및 그 내용									
	2.규제조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위임법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의무복무의사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의무복무 등을 성 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복무 현황관리 체계를 구축함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는 의무복무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7.규제내용	의무복무의사 및 의무복무기관의 장이 의무복무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주기 및 절차 규정 마련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의무복무의사</td><td>연간 약 100여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의무복무의사	연간 약 100여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의무복무의사	연간 약 100여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의무복무의사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신의 복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 상황 보고서로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의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날 나. 제8조제8항에 따라 변경된 의무복무기관에서 복무를 시작한 날 2. 정기 보고 : 매 분기 말일 3. 수시 보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무 상황 보고서 2. 그 밖에 의무복무의사의 복무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현 행	개 정 안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최종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의무복무의사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의무복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복무 현황관리 체계를 구축함
- 정부는 의무복무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주기 및 내용 1
	내용	의무복무 현황관리 체계 구축
규제대안2	대안명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주기 및 내용 2
	내용	대안 1에서 의무복무 실태보고 주기를 매월 말일로 변경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의무복무 실태 보고 주기 등 규정하여 의무복무 현황 관리 체계 구축	분기별 의무복무 실태보고에 따라 월별 변동 현황 등 즉각적 확인 불가
규제대안2	의무복무 현황 파악 주기 단축하여 의무복무의사의 이탈 등 발생 시 빠른 확인 및 대처 가능	의무복무 실태보고서 작성 업무 부담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의무복무의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의무복무기관의 장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의무복무의사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의무복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의무복무 현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안 1 선택

3. 규제목표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 목적의 정당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복무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 그 목적이 정당함
- (수단의 적합성·비례성) 의무복무의사가 복무 상황보고서를 일정한 주기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그 수단의 적합성과 비례성이 인정됨
 - 복무 상황보고가 별지 서식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법률에서 분기별 보고를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도 이에 맞춰 적절한 보고 주기를 마련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미설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규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의 개념이 명확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의 개념이 명확하므로 유연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주기 및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지대상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사항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는 보고사항으로 사후에 평가할 사항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포함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자치의과대학) 벽지 등 의료취약지 내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47개의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설립
 - 자치의과대학 입학생 선발, 재정 지원, 졸업 후 근무 배치 및 의무복무 등의 관리는 각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어 수행
 - 재학 기간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
 - 의무복무 및 전문성 강화를 연계한 9년 단계별 경력 지원 체계(1-2년차 초기 임상 연수, 3-5년차 벽지 등 의료취약지 근무, 6-7년차 후기 연수, 8-9년차 지역 의료 재종사 및 기술 환원)
- (미국 NHSC) 의료인력 부족 지역(HPSA,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의 인력 공백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함
 - NHSC는 크게 ①연방 장학금, ②연방 대출 상환, ③주 운영 대출 상환의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NHSC 재원은 ①지역사회보건센터기금(CHCF, Community Health Center Fund)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②연방 재량예산을 통해 일부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지원함
 - 2023년 회계연도 기준, NHSC를 통해 HPSA 지역에서 근무 중인 의료 인력은 총 18,335명으로 집계됨
 - 2020 회계연도 기준, NHSC 의무 복무를 완료한 인력 중 약 86%는 복무 종료 이후에도 HPSA 또는 기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고됨
- (독일 지역 의사 할당제) 「대학 입학에 관한 국가조약(Staatsvertrag über die Hochschulzulassung)」 제9조에 따라 지역 의사 할당제는 농촌 및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활동할 의지를 가진 가정의(주치의, Hausarzt)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할당제 정원으로 배정하는 제
 - 지역 의사 할당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³⁾.

1) 의과대학 졸업 후 사회보장법 제5권(SGB V) 제73조 제1항 a에 따라 지정된

3) Landesamt für Gesundheit und Arbeitsschutz Nordrhein-Westfalen.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einer Bewerberin/eines Bewerbers. www.lzg.nrw.de/10350678에서 2026.02.10. 인출.

전문 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마쳐야 함.

2) 지정된 전문 과목은 공적 의료보험 의사협회(Kassenärztliche Vereinigungen, KVen)의 수요 예측을 고려하여 주정부가 특별한 공공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한 분야이어야 함

3) 이후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10년간 계약의 (Vertragsarzt)로서 가정의로 활동해야 함

- (프랑스 공공의료복무계약) 공공의료복무계약(Contrat d'Engagement de Service Public, CESP)은 2009년 7월 21일 제정된 「병원·환자·보건·지역법 (Hôpital, Patients, Santé et Territoires, HPST)」에 따라 의과대학 및 치과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의 활동을 계약하는 재정 지원형 계약 제도

· CESP 대상자는 학업 또는 역량 보완 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개업의 또는 봉급의로서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함.

1) 지정 지역은 의료 공급 부족 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의미함

2) 지정 지역은 지역보건청 청장과 지역보건위원회(conseil territorial de santé)가 협의를 거쳐 2년마다 지정됨

3) CESP 대상자는 지정 지역 중에서 근무지를 선택함

· CESP 계약을 체결한 학생 중 3주기(전공 수련 과정)를 앞둔 학생은 매년 보건부 및 고등교육 담당 장관 공동 고시로 정해진 전공의 정원 내에서 전공을 선택해야 함

○ 타법사례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 자료제출의 의무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주기 및 내용 1>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34	1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주기 및 내용 1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의무복무 실태보고 자료 제출은 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 종료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규제의 준수 가능성 높음
- 자료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등의 제재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력 제고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업무 위탁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서 졸업생에 대한 관리를 시행할 예정으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확보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5.26 제정, '26.11월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 현황 관리 및 제재 조치 등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복무 이행을 평가 실시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복무의 이행력 제고, 의무복무의 시작과 종료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 등이 타당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34	1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주기 및 내용 1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주기 및 내용 1>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면허정지 기준		
	2.규제조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3.위임법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정명령, 면허정지 및 면허 취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정부개입 필요성) 시정명령,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는 성실한 의무복무를 유도하고 의무복무에 대한 관리체계 작동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		
	7.규제내용	의무복무 미이행, 의무복무 상황 보고서 미제출, 의무복무기관 변경시 사전 미승인 등 법률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등을 마련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9.규제목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정명령)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의무복무의사가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②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령 위반 사항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u>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의 기준(제12조 관련)</u> 1. 공통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정지와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나. 행정처분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현행	개 정 안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 1)·2)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table><tr><th rowspan="2">감경대상</th><th colspan="2">감경기준</th></tr><tr><th>면허취소</th><th>면허정지</th></tr><tr><td>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td><td></td><td>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td></tr><tr><td>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td><td></td><td>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td></tr><tr><td>3) 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td><td></td><td></td></tr><tr><td>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td><td></td><td>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td></tr><tr><td>나)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td><td></td><td>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td></tr><tr><td>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td><td></td><td>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td></tr></table>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그중 더 무거운 처분 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바. 면허정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버린다.	감경대상	감경기준		면허취소	면허정지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3) 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	나)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감경대상	감경기준																							
	면허취소	면허정지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3) 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																						
나)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현행	개정안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1)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2)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3)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면허정지 1개월
	4)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정지 15일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	면허취소
	다.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면허정지 3개월 3차 위반: 면허취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정명령,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시정명령,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는 성실한 의무복무를 유도하고 의무복무에 대한 관리체계 작동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법률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등을 마련함
 -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정명령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마련함
 -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세부사항은 위반사항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지역의사양성법 등 유사사례 등을 반영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마련함
- (선택 근거)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법률 위반사항의 중대성, 반복적 위반에 대한 단계별 조치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의무복무의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3. 규제목표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 목적의 정당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 그 목적이 정당함
- (수단의 적합성·비례성) 성실한 의무복무의무와 의무복무 사항 실태보고 등은 법률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조치로 의료법, 지역 의사양성법 등 유사법률에서도 동일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시정명령 이행기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단계적 적용 등은 유사 입법례를 준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사회적 수용성 높을 것으로 판단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일본 자치의과대학) 벽지 등 의료취약지 내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47개의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설립
 - 자치의과대학 입학생 선발, 재정 지원, 졸업 후 근무 배치 및 의무복무 등의 관리는 각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어 수행
 - 재학 기간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
 - 의무복무 및 전문성 강화를 연계한 9년 단계별 경력 지원 체계(1-2년차 초기 임상 연수, 3-5년차 벽지 등 의료취약지 근무, 6-7년차 후기 연수, 8-9년차 지역 의료 재종사 및 기술 환원)
- (미국 NHSC) 의료인력 부족 지역(HPSA,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의 인력 공백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함
 - NHSC는 크게 ①연방 장학금, ②연방 대출 상환, ③주 운영 대출 상환의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NHSC 재원은 ①지역사회보건센터기금(CHCF, Community Health Center Fund)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②연방 재량예산을 통해 일부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지원함
 - 2023년 회계연도 기준, NHSC를 통해 HPSA 지역에서 근무 중인 의료 인력은 총 18,335명으로 집계됨
 - 2020 회계연도 기준, NHSC 의무 복무를 완료한 인력 중 약 86%는 복무 종료 이후에도 HPSA 또는 기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고됨
- (독일 지역 의사 할당제) 「대학 입학에 관한 국가조약(Staatsvertrag über die Hochschulzulassung)」 제9조에 따라 지역 의사 할당제는 농촌 및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활동할 의지를 가진 가정의(주치의, Hausarzt)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할당제 정원으로 배정하는 제
 - 지역 의사 할당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⁴⁾.

4) Landesamt für Gesundheit und Arbeitsschutz Nordrhein-Westfalen.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einer Bewerberin/eines Bewerbers. www.lzg.nrw.de/10350678에서 2026.02.10. 인출.

- 1) 의과대학 졸업 후 사회보장법 제5권(SGB V) 제73조 제1항 a에 따라 지정된 전문 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마쳐야 함.
 - 2) 지정된 전문 과목은 공적 의료보험 의사협회(Kassenärztliche Vereinigungen, KVen)의 수요 예측을 고려하여 주정부가 특별한 공공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한 분야이어야 함
 - 3) 이후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10년간 계약의 (Vertragsarzt)로서 가정의로 활동해야 함
- (프랑스 공공의료복무계약) 공공의료복무계약(Contrat d'Engagement de Service Public, CESP)은 2009년 7월 21일 제정된 「병원·환자·보건·지역법 (Hôpital, Patients, Santé et Territoires, HPST)」에 따라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의 활동을 계약하는 재정 지원형 계약 제도
 - CESP 대상자는 학업 또는 역량 보완 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개업의 또는 봉급의로서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함.
 - 1) 지정 지역은 의료 공급 부족 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의미함
 - 2) 지정 지역은 지역보건청 청장과 지역보건위원회(conseil territorial de santé)가 협의를 거쳐 2년마다 지정됨
 - 3) CESP 대상자는 지정 지역 중에서 근무지를 선택함
 - CESP 계약을 체결한 학생 중 3주기(전공 수련 과정)를 앞둔 학생은 매년 보건부 및 고등교육 담당 장관 공동 고시로 정해진 전공의 정원 내에서 전공을 선택해야 함

○ 타법사례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시정명령,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등은 법률 위반의 경중과 횡수에 따라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준수 가능성 높음
- 특히, 면허에 대한 제재조치는 의무복무의사의 직업선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집행시기에 맞춰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조직 등을 신설하여 집행할 계획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본 규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복무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재조치로 목적과 수단 등이 타당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34	1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